

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

<목 차>

1.미사용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근거 마련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자	이름	윤송이
	담당부서 (과)	중소금융과		직급	행정사무관
	국장	이형주		연락처	02-2100-2983
	과장	김종훈		이메일	2081001@mail.go.kr

2021. 08. 24. 작성

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미사용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근거 마련		
	2.규제조문	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제36조, 제38조		
	3.위임법령	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의7조		
	4.유형	강화	5.입법예고	2021.08.26 ~ 2021.10.07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성여신 및 지급보증(이하 '한도성여신 등')은 자금이 일시 인출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급격한 익스포져 증가 및 유동성 압박 초래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은행·보험업권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에 대해 총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 중이나, ○ 그 외 2금융권은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(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등)가 미흡하여, 총당금이 과소하게 적립되는 문제 제기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호저축은행업권의 경우에도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총당금 적립의무를 마련하고 있으며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한도성여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총당금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<p>* '20년말 상호저축은행업권의 한도성여신의 미사용금액은 5.4조원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증가한 서민 자금수요가 은행 등의 신용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의 한도성여신 등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는 바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호저축은행업권의 한도성여신에 대한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를 위해 동 여신에 대한 총당금적립을 의무화할 필요 - 이에 은행·보험업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도성여신에 대한 규제 수준을 준용하여 업권간 규제 차이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		
	7.규제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호저축은행업권의 한도성여신 및 지급보증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적립의무 부여</p>		

현행	개정안
<p>7.·8. (생략) <신설></p> <p>② ~ ⑥ (생략) ⑦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 현재 미사용약정(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, 약정기간 등을 사전에 정하고,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 및 상환할 수 있는 대출의 미사용약정)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까지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⑥ (생략) ⑦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</p>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한도성여신, 지급보증(이하 '한도성여신 등')은 자금이 일시 인출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급격한 익스포져 증가, 유동성 압박 초래 가능
 - 이를 감안하여 은행·보험업권은 이러한 여신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동 여신 취급유인을 통제하고 있으나,
 - *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서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부여 등
 - 상호저축은행업권을 포함한 2금융권은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
- 상호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충당금 적립의무가 마련되어 있고,
 -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한도성여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충당금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
 - * '20년말 상호저축은행업권의 한도성여신 미사용금액은 5.4조원
 - 다만, 규제 공백으로 인해 동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지 않아, 대손충당금의 과소 적립 우려 및 향후 리스크 실현 시 부실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
-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증가한 서민 자금수요가 은행에서의 신용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의 한도성여신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는 바,
 - 상호저축은행업권의 한도성여신에 대한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를 위해 동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할 필요

□ 「관계기간 합동 「가계부채 관리방안(20.4.29)」」을 통해, 은행·보험 외 2 금융권에도 한도성여신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이 발표되었으며,

-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**은행·보험과 동일한 신용환산율 40%***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여할 것과,

* 은행·보험은 '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율 40% 적용 예정

- 규제 도입에 따른 **업권별 부담 및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***

* (상호저축은행) ('22년) 20% → ('23년) 40%

□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도 **한도성여신 등에 대해 건전성을 분류하여 신용환산율 적용 및 충당금 적립의무를 반영토록** 개정할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비교

○ 규제대안의 내용

규제대안1	대안명	감독규정에 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단계적 도입
	내용	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며, 충당금적립 시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40%를 단계적으로 시행(20%→40%)토록 반영
규제대안2	대안명	감독규정에 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 도입
	내용	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며, 충당금적립 시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40%를 일률적으로 즉시 도입

○ 규제대안의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규제대안1	상호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강화 및 업권 내 규제도입 부담 최소화	단계적 도입에 따라 2금융권간 일시적 규제차이 발생
규제대안2	업권간 규제차익의 신속한 해소와 건전성 강화 가능	충당금 추가적립 등 규제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인 건전성지표 악화 우려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상호저축은행업권	규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	특이사항 없음
금융감독원	규제 도입에 찬성하나, 업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준비 및 적용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	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

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- 상호저축은행업권의 ①**건전성 강화**와 ②**규제 도입에 따른 업권 부담 최소화**를 모두 고려하여 **대안1**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

3. 규제목표

- 타 금융권(은행·보험)에서 시행 중인 **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상호저축은행업권의 경영건전성 강화 및 업권간 규제형평성 제고**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여신금융업권은 **은행·보험업권들과 마찬가지로 한도성여신(미사용 약정 등)을 취급하고 있으나,**

- **한도성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 적립의무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가 업권마다 상이하여 규제차이 발생 중**

<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금융업권 위협관리(대손충당금 적립의무) 현황 >

구분	은행·보험	저축은행	여전		상호금융
			카드	캐피탈	
총당금 적립의무 여부	한도성여신	○	×	△ (신용카드만)	×
	지급보증	○	○	△ (PF대출만) (PF대출만)	(취급금지)

□ 이에 상호저축은행업권을 포함하여 2금융권 한도성여신의 위협관리 체계(대손충당금 적립의무)를 은행·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업권간 규제차이도 해소하는 것으로 비례타당성 존재

< 2금융권의 한도성여신 등 위협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>

구분		총당금 적립 여부 (신용환산율(%))		
		기존	개선(안)	
저축은행	한도성여신	×	('22)20% ('23)40%	
	지급보증	100%	(좌 동)	
여신금융	한도성 여신 (기존)	신관	50%	
		현금서비스		('23)40%
		카드론		
	(신규)	기타 한도성 여신	×	
지급 보증	부동산PF	100%	(좌 동)	
	부동산PF外	×	100%	
상호금융	한도성여신	×	('22)20% ('23)30% ('24)40%	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
기술	경쟁	중기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: 해당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: 해당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: 해당없음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: 해당없음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: 해당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: 해당없음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 여부

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: 해당없음

관련 국제기준	일치여부	불일치 사유(불일치 시에 한함)

○ 타법사례

: 은행 및 보험업권에서도 감독규정상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 위험관리체계를 기 도입하고 있음

4. 비용편익 분석

<규제대안 1 : 감독규정에 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 도입>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직접비용 54,029.6백만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(년)	할인율(%)	단위
2020	2022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 1 : 감독규정에 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 도입
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	직접	54,029.6		54,029.6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·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54,029.6		54,029.6
기업순비용		54,029.6	연간균등순비용	7,135.46

III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: “관계기간 합동 「가계부채 관리방안(20.4.29)」 발표”를 통해 검토 및 논의된 사항으로 상호저축은행업권은 일정 유예기간 부여시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, 금감원의 지속적인 검사·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가능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: 금감원의 검사·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: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: “관계기간 합동 「가계부채 관리방안(20.4.29)」 발표”를 통해 검토 및 논의되었던 ‘2금융권의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강화’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권에도 동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

2. 향후 평가계획

: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(‘21년도 하반기) 이후 유예기간동안 해당 규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할 예정

3. 종합결론

: 한도성여신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동 여신 취급에 대한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,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완화 및 규제형평성 제고

별첨

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0	2022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1 : 감독규정에 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 도입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54,029.6		54,029.6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54,029.6		54,029.6
기업순비용		54,029.6	연간균등순비용	7,135.46

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
편익 분석의 경우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정성분석을 실시하였음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감독규정에 상호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한도성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즉시 도입>

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□ 직접비용

(정량)세분류	상호저축은행
활동제목	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신설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
비용항목	기타
비용	54,029,600,642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비균등/비정률
산식	<p>□ (규제비용 산출산식) 규제 도입에 따른 '20년말 대비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×전년 대비 당해연도 신용환산율 증가수준(신용환산율 40% 대비)*</p> <p>* 상호저축은행업권은 신용환산율 40% 도입에 대해 '22년 : 20%(전년 대비 △20%p), '23년 : 40%(전년 대비 △20%p)순으로 점진적으로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'22년) 규제도입에 따른 '20년말 대비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*(2/4=△20%p/△40%p) ○ ('23년) 규제도입에 따른 '20년말 대비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*(2/4=△20%p/△40%p)
근거설명	<p>□ (근거설명)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신설 시 상호저축은행업권은 추가적인 총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규제비용이 발생함에 따라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호저축은행업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을 산정하여 동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 도출 - (가정)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도입, 신용환산율 40% 적용을 가정하여 산출 - 이에 '20년말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증가내역을 산출하였으며, 총 603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<p><상호저축은행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내역></p> <p>(억원, %, %p)</p>

구분	'20말(a)	신용환산율(40%) 적용후(b)	증감(b-a)		
			금액	비율	
총당금	대상자산	780,271	801,793	+21,522	+2.8
	요적립액	33,487	34,141	+654	+2.0
	실적립액	36,808	37,412	+603	+1.6
	총당금적립률	109.9	109.6	△0.3	

○ 다만, 업권 부담 완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신용환산율(40%)을 점진적으로 도입('22년 : 20%, '23년 : 40%)하므로,

- 연간 규제비용은 위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액(신용환산율 40% 기준)을 전년 대비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신용환산율 증가수준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함

1) '22년에 적용되는 신용환산율은 20%(전년 대비 △20%p)이므로 총 신용환산율 도입수준인 40%(△40%)와 대비하여 2/4 적용

2) '23년에 적용되는 신용환산율은 40%(전년 대비 △20%p)이므로 총 신용환산율 도입수준인 40%(△40%)와 대비하여 2/4 적용

※ '23년 이후로는 신용환산율의 증가가 없으므로 별도의 비용발생이 없음

□ 직접편익

(정성)세분류	상호저축은행업권
활동제목	한도성여신 관련 금융리스크 감소
편익항목	기타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
근거설명	<p>□ 한도성 여신은 거액의 자금이 일시 인출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회사에 갑작스러운 익스포져 증가 및 유동성 압박 등의 금융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나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도성여신에 대한 총당금 적립의무 등을 도입하여 해당 금융리스크에 대비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업권 전반의 금융리스크 감소가 가능함 ○ 다만, 이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정성 분석 실시

②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:

편익

(정성)세분류	기업 및 소상공인
활동제목	한도성여신 관련 금융리스크 감소 및 전이 방지
편익항목	기타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
근거설명	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성여신 관련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업권이 부실해지거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,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및 투자 위축, 실물 경제 악영향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나, -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등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전이될 수 있는 금융 리스크가 감소 - 다만, 이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정성 분석 실시

③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:

편익

(정성)세분류	일반 서민금융이용자
활동제목	한도성여신 관련 금융리스크 감소 및 전이 방지
편익항목	기타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
근거설명	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성여신 관련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업권이 부실해지거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에 <input type="checkbox"/> 중,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될 수 있고 실물 및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나, -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서민금융이용자에게 전이될 수 있는 금융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음. - 다만, 이에 대해 정량 분석을 하기 어려워 정성 분석 실시